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 안 번 호	36

발의연월일 : 2026년 9월 4일
발 의 자 : 이창열 의장

1. 주 문

○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및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중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○ 활동기간은 **2026년 9월 1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**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○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**「공유재산관리계획(변경)계획안 및 」**을 심사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평창군의회위원회 조례」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.

3. 참고사항 : 관계법령

가.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

나.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

활 동 계 획

1. 활동목적

○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
○ 신속한 의사진행

2. 심사안건

○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계획안

3. 활동기간

○ **2026년 9월 1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**로 한다.

4. 구 성

○ 김성기 의원, 김광성 의원, 남진삼 의원,
심현정 의원, 임현우 의원, 김진옥 의원

【관계법령】

□ 지방자치법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□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

제2조(설치) ① 평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「지방자치법」제64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(이하 “본회의”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를 위하여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 이 경우 예산안 관련 안건(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말한다)의 심사를 포함한다.

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